

보호구 착용에 역량 집중 11~12월 대대적인 점검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 중 대표적인 것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더운 날씨 때문에 높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가 일각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이 지금 산업현장의 현실이다.

이러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11~12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별주 공사현장 ▲근로감독관의 출장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기간 중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적발할 경우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 중 지붕위에서 추락하거나 틀비게 및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는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사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내년부터는 매월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건설 현장에 보호구 착용 생활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6개 사무 지방이양 예고 지난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최대 이슈였던 지방이양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분야 사무 중 6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을 보면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에 대한 업무, 사업장내 평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의 업무가 지방이양된다. 또 진폐법에 따라 진폐근로자 보호 관련 기능 중 3개 국가 사무, 즉 작업환경 측정대행자 지정, 지정취소·영업정지, 청문 등의 권한도 광역자치단체에 이양된다.

이들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수탁기관 및 직무교육 미이수자, 그리고 평예감독관 위촉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이에 맞게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의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내용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분야 관계자들과 환노위 국회의원들은 지방이양 자체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에도 많은 잡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발은 예상대로 매우 큰 상황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지방이양 문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논의 자체가 되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며 “이번에는 축소 발표됐지만 이 개정안이 지방이양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지방이양의 선례를 남기게 되면, 향후 타 사무의 지방이양 개정안이 나와도 반대의 명분이 없어진다”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 안전보건기관들과 연합해 이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현장 사망재해 범정부적으로 대처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최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7차 정기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3억 미만 건설현장의 기술지원 대상이 확대(2011년 2만5천개소 → 3만개소)되고, 공시금액 3~120억원의 공사현장 기술지도를 산업안전지도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 80명 수준이었던 건설분야 안전보건지킴이 수를 2013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규모 현장 점검을 감독으로 전환해 범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시설 설치 및 증·개축 공사 시 붕괴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높이 4미터 이상 학교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이 우수한 시스템 동바리 사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학교시설 공사현장에 대해 고용부와 함께 협동단속을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자치단체별로 강화하여 추진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3~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여 미체결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발주기관, 시공사, 건축사의 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자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사발주기관에 대해 건설재해예방특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조치하고,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들의 실무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을 6시간 이상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주로 저학력·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일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드는 것은 공생 발전의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정부부처들이 적극 협력하여 반드시 사망재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지킴이, 10만명 목표로 ‘Start’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지킴이 육성계획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14년까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총 10만명의 안전보건지킴이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6만5천명, 건설업 5천명, 서비스업 3만명 등이다. 올해 1만명을 시범적으로 양성한 후 매년 3만명을 길러낸다는 방침이다.

지킴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 감독자와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위 이상 건설 업체 소속 기술관리직 및 작업반장 중에서 지정된다. 이들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해 필요 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고용부는 지킴이로 지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8 시간(서비스업 4시간) 교육을 한 후 인정서를 발부 키로 했다.

참고로 안전보건지킴이 지정사업장에는 지도점 검 면제, 클린사업 우선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안전보건지킴이로 활동하는 근로자는 향후 안전보건 관련 자격 취득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전 사업장의 9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담당자가 따로 없어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라며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체계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안전보건지킴이’ 사업과 관련해 양성교육기관도 선정·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전국 27개 지회, 대한산업보건협회의 5개 센터(부산, 광주, 전북, 경기, 대구) 등이 양성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지역별로 서울은 (사)한국산업간호협회,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사)한국건설안전기술 사회, 대구는 (주)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부산은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창원은 (주)경남안전과 (주)코리아베스트세이프티아, 포항은 한국산업안전컨설팅(주), 부천은 제일건설안전기술(주)이 각각 선정됐다.

국토부, 터널 공사 안전관리 강화

도로, 철도 등 터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굴착이 진행 중인 도로와 철도 터널 공사현장 300여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시공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 공사현장과 국도 36호선 광비1터널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해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터널공사 이행절차와 관련 기준 등을 재검토해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터널사고가 기존의 안전사고와 달리 예측하기 힘든 암반 절리 등에 의한 붕괴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터널, 지반, 시공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터널표준시방서와 현장의 실제 시공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시방서 개정, 안전점검 및 현장 교육 강화, 지질 조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근로자들의 사고, 원청 재해율에 반영

앞으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산재사고가 원청의 재해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대책에는 사내 하도급 비율이 높은 업종의 대규모 기업에 대해 원청의 재해율 산정 시 사내 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원청사업주가 사내하도급의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업종을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 키로 했다. ☞